
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. 11. 5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건강증진과)
- 제출일자: 2020. 10. 15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임시회 제2차,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10. 29./ 11. 5.)

2. 개정이유

- 우리 구 합계출산율(0.89명, 2019년) 및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첫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용품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장려지원내용에 육아용품지원을 추가함에 정의 규정 신설 (안 제2조제2호, 제7호)
- 나.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내용 신설(안 제4조제2호)
- 다. 육아용품 지원대상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라. 육아용품 지원기준 신설(안 제6조제2항)
- 마. 육아용품 지원방법 신설(안 제8조)
- 바. 육아용품 지원대상등 비치 및 관리 관련 규정 추가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감당키 곤란한 수준의 복지예산 증가 및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. 이에 중앙정부·지방정부가릴 것 없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음.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정책 방식으로는 지원된 예산 규모 대비 그 정책 효과는 보잘 것 없다는 평가가 팽배.
- 동 개정안 및 현행 달서구 조례에 규정된 달서구의 출산지원(장려) 정책들이 투입 예산 규모 대비 그 정책효과는 어느 수준인지,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별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□ 개정안 내용 포함, 달서구의 현행 출산 장려 정책 내용

-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하려는 출산 장려 정책은 첫째(둘째 이상은 제외)를 출산한 가정에게 20만원내의 육아용품 지원 (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6조제2항)하고자 함.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, 앞으로 달서구의 출산 장려 지원 내용은 표와 같음.

조례 명	지원 항목	지원 대상 및 규모				
		첫째	둘째	셋째	넷째	다섯째
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	출산축하금			100만	200만	500만
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	현행			20만	20만	20만
	개정안	육아용품	20만			

- 참고: 현행 조례 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에서 “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대구 시에서 “(구)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~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구는 중복 지원을 하고 있음.

□ **달서구 출산 장려 정책 관련,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**

- 개정안에서 “육아용품”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라 규정(안 제2조제2호 및 제7호)하여 6세가 되기까지 그 부모는 연령에 맞춰 필요한 육아용품은 언제든지(1회)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, 안 제8조에서 “~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”한 자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조문 간에 혼선 우려 있음. 관련 조문의 수정 여부 검토 필요.
-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 받는 <출산축하금>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<육아용품>을 구매하도록 함이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볼 때, 집행부가 기존 지급하는 <출산축하금>에 추가로 20만원을 더하지 않고, 대신 20만원 상당의 <육아용품> 현물로 굳이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
- <출산축하금>및<입학준비금>은 셋째아이부터(넷째, 다섯째 포함) 지원하지만, <육아용품>은 첫째아이에게만(둘째 이상은 제외) 지원하도록 대상자 선별 기준을 이처럼 달리 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6.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 라 한다)”를 “신청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신청대장을, 구청장은”을 “신청대장과”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 라 한다)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)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 라 한다)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육아용품 지원신청 등) ① 육아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를 <u>구청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신청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육아용품 지원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동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 (생 략)</p>	<p>제9조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	<p>제9조(개정안과 같음)</p>

제9조(대장비치 등)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장비치 등)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을,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장비치 등) -----

-----신청대장과-----

